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통합허가는 그 특성상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어 허가 준비와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허가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통합허가 대행업자의 역량부족, 관리체계 부재 및 재위탁 등 시장교란 행위로 인해 허가절차의 지연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가 도입(법률 제17856호, 2021.1.5.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유예기한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한 사용 중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산정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

나. 통합허가대행업의 변경등록 대상 규정(제4조의2제2항)

- 다.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해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등을 규정(제23조의2 및 별표13의2)
- 라. 등록제 관리를 위한 통합허가시스템 업무 근거 마련(제33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7)
- 마. 통합허가대행업에 대한 개별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 1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O건(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법 제6조제6항”을 “법 제6조제7항”으로 한다.

제2장의2(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1조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란 별표 4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및 명칭
2. 대표자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4. 사무실의 소재지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경과조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제33조제1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입력·보존에 관한 업무

4의4.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에 관한 업무

4의5.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업무

4의6.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4의7. 법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대행 실적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행 실적의 관리에 관한 업무

별표 4의2 및 별표 13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4호	300	400	500
---	--------------	-----	-----	-----

별표 14 제2호마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거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 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2호	500	700	1,000
바. 법 제1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5호	300	400	500
사. 법 제1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6호	300	400	500
아.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도록 한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경우	법 제47조제5항제2호	100	200	300

별표 14 제2호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11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5항제3호	100	200	300
차. 법 제11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47조제5항제4호	100	200	300

별표 14 제2호타목을 머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의2]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4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나.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1명이 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 다.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다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 라.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와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한 환경건설팅회사는 보유한 기술인력을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기술인력 기준

구분	인력기준
가. 고급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갖출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통합허가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분야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통합허가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통합허가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일반인력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을 갖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통합허가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통합허가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비고

1. “통합허가 분야”란 대기, 수질, 폐기물, 상하수도, 소음·진동, 토양보전, 환경보건, 환경정책, 환경관리, 환경기술개발·연구, 화학공학 및 화학 등 통합허가 대상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통합허가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학위 또는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가지기 전과 가진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나목의 일반인력에는 “통합허가 분야” 중 대기 분야의 자격을 가지거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기 분야에 종사한 사람 2명 이상(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목의 고급인력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3. 통합허가대행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제2호 각 목의 기술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나. 제2호 각 목의 기술인력 숫자에 해당하는 제도 설계(CAD, Computer Aided Design) 프로그램 등 도면설계 프로그램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 각 1식

경과조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의2 관련)

1. 과징금 부과기준

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한 값에 사용중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같은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유예기한 내에서 해당 사업장이 진행한 통합허가 절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단계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text{과징금 금액} = \text{연간 매출액} \times 1/3,600 \times \text{사용중지 일수} \times (\text{단계별 부과계수})$

비고

1. 사용중지 일수는 법률 제13603호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중지 3개월은 90일로, 사용중지 6개월은 180일로 한다.
2. 과징금을 산정할 때 해당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용중지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연간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사용중지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 대상 사업장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단계별 부과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허가절차 진행 단계	부과계수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완료되지 않은 경우	1.0
법 제5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완료한 경우	0.7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통합허가를 신청한 경우	0.5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서류를 수정·보완 중인 경우	0.3

2. 과징금의 감경 기준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허가절차 진행상황,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통합허가) ① ~ ③ (생략)</p> <p>④ <u>법 제6조제6항</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조(통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법 제6조제7항</u>----- -----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u></p> <p><u>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1조2제1항</u>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란 <u>별표 4의2와 같다.</u></p> <p><u>② 법 제11조의2제1항</u>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상호 및 명칭</u> <u>2. 대표자</u> <u>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u> <u>4. 사무실의 소재지</u> <p><u>제23조의2(경과조치에 따른 과징</u></p>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금 부과기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①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입력·보존에 관한 업무

4의4.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에 관한 업무

4의5.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업

<p><u><신 설></u></p> <p><u><신 설></u></p> <p>5. ~ 16. (생 략) ② ~ ④ (생 략)</p>	<p>무</p> <p><u>4의6.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 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 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 한 업무</u></p> <p><u>4의7. 법 제11조의9제1항에 따 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대행 실 적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행 실적의 관리에 관 한 업무</u></p> <p>5.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연 락 처	(044) 201 - 6717